일본의 인권조례도시를 가다

중 최하위 계층 '부락민'

在日 한국인 차별 정책이 日 인권운동 시발점

일본의 '인권 조례' 활성화는 부락민(部落民)에 대한 차별 문제에서 비롯됐다. 부락민은 근대화 이전 한국의 '백정(白丁)'과 유사한 최하위 신분으로, 최근까지 결혼과 회사 입사 등의 과정에서 극심한 차별을 받아왔다.

특히 부락 차별이 극에 달했던 1930년대 오사카 지역을 중심으로 한 부락민 10명 중 4명은 재일 한국인으로, 신분 차별의 정도가 심각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들 한국인 가운데 대부분은 정부의 강제 이주정책 등에 의해 대거 부락민으로 전락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과거 한국인에 대한 차별 정책이 일본의 인권 개선에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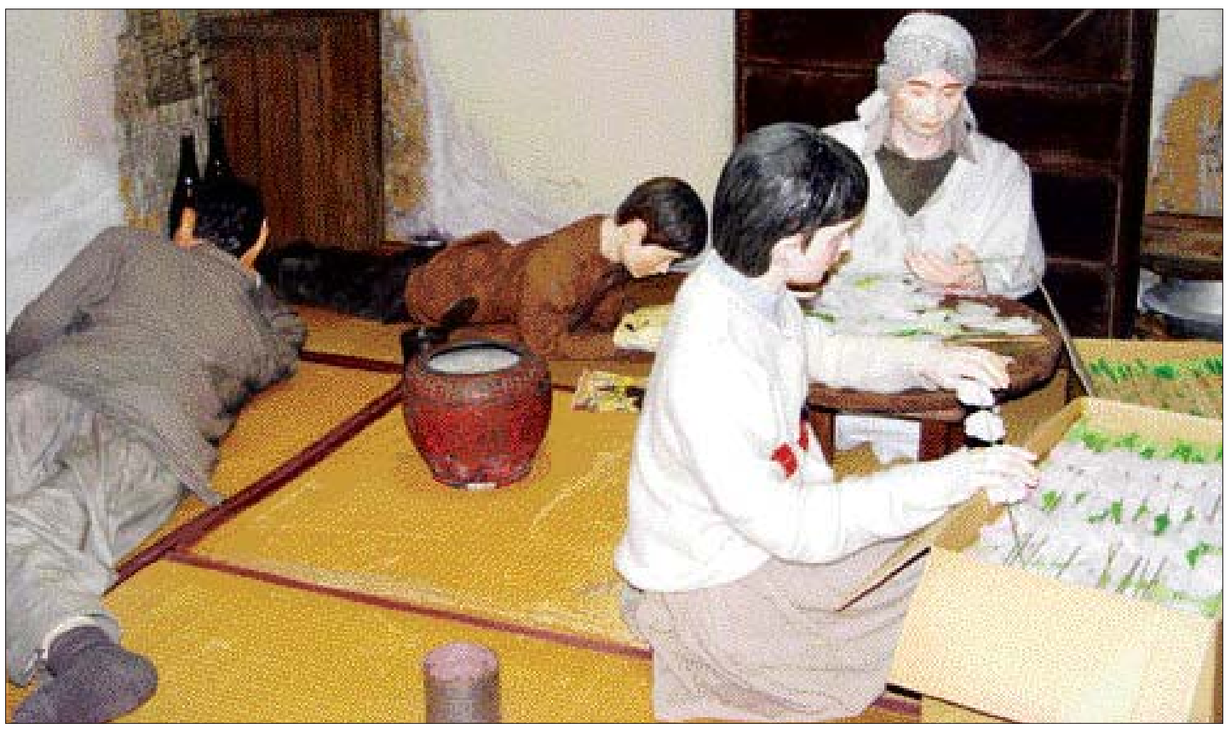

오사카의 '헤노마쓰 인권역사관'에 전시 중인 1900~1940년대 부락민 거주지의 재현 모습. 재일 한국인들이 다수 포함된 부락민들은 열악한 거주지에서 공동으로 거주하며, 가죽이나 고기를 다루는 일이나 막노동 등으로 생계를 이어갔다.

오사카 지역 부락민 10명중 4명 한국인 차별의식 여전

'부락 해방 기본법' 제정 운동 '인권 조례' 끌어낸 원동력

◇**한국인 차별정책이 '일본 인권' 성장의 밑거름**=사카이시 '헤노마쓰 인권역사관'에 따르면 지난 1938년 오사카 지역의 총 부락민 7천여명 가운데 재일 한국인은 40.4%(2천828명)에 달했다.

부락에 대한 차별이 1920~1930년에 가장 극심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본 역사상 가장 큰 차별을 받았던 계층 가운데 상당수가 한국인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당시 부락민 대부분은 정부에 의해 오사카 지역을 중심으로 강제 이주된 뒤 열악한 거주환경 속에서 피폐한 생활을 해야 했다.

재일 한국인 등 부락민들에 대한 차별은 1969년 일본 정부가 '차별해소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시행하기 전까지 지속됐다. 정부가 뒤늦게 나마 피차별 부락에 대한 환경 및 시설 개선과 교육 및 취업 제도 개선 등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다.

◇**주거 등 거주 환경은 개선됐지만 '차별의식'은 여전**=정부가 신분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법을 시행했음에도 부락에 대한 차별문제는 쉽게 근절되지 않았다. 부락 정비 사업으로 주택과 공공시설 건설 등 외형적 차별은 다소 해소되는 듯 했으나 뿌리깊은 '차별 의식'은 여전했기 때문이다.

특히 1975년 발견된 '부락지명총감'은 일본의 차별 철폐 운동의 도화선이 됐다. 부락민들의 각종 정보를 담은 이 책의 존재가 알려진 이후 부락 철폐를 중심으로 한 인권 운동이 전국 각지에서 일어났다.

또 부락에 대한 차별 의식은 최근까지도 결혼이나 회사 입사 과정 등에서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일부 계층은 자녀의 결혼 상대자에 대한 정보를 흥신소를 통해 제공받는 대가로 50만~70만엔(한화 656만~920만원)의 비용을 쓰고 있다는 게 부락해방·인권연구소 측의 설명이다.

◇**"부락 차별 철폐" 목소리가 '인권 조례' 운동의 원동력**=1985년부터 시작된 '부락해방 기본법' 제정 운동은 1990년대 일본의 '인권 조례' 운동을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됐다. 차별 철폐를 요구한 시민·사회단체들의 목소리가 일본의 '인권 선진지' 도약에 직접적 계기가 된 것이다.

1985년 당시 '부락해방 기본법'에는 ▲피차별 부락의 주거 실태 개선 ▲차별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 ▲차별 피해자에 대한 구제 ▲차별 타파를 위한 교육·계몽활동 실시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 법은 1993년 6월 도쿠시마(德島)현 아난(阿南)시의 '부락차별철폐·인권옹호에 관한 조례'를 시작으로 전국 지자체(1천835곳) 가운데 399곳에서 '인권 조례'를 제정하는 이론적 토대가 됐다. 또 이 법은 지난 2000년 12월 시행된 '인권교육·개몽 추진법'의 모태가 됨으로써 각종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를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일본의 차별철폐 운동은 1980년대부터 본격화된 각 지자체의 '인권 조례' 운동에 직접적 원인이 됐으며, 장애자기본법(1993년), 고령자사회대책기본법(1995년), 남녀공동참여사회기본법(1999년) 등 소외계층의 인권 보호를 위한 각종 법안들을 이끌어냈다.

/글·사진=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헤노마쓰 인권역사관'을 찾은 관람객들이 역사관 직원으로부터 일본의 차별 철폐 운동 과정과 피차별 부락민들의 생활상 등을 듣고 있다.

◇**부락지명총람**=1975년 11월 발견돼 전 일본 열도를 충격에 빠뜨렸다. 일본의 주요 흥신소 등에서 작성한 문건으로, 전국의 5천300여개소에 이르는 피차별 부락(部落)의 이름, 소재지, 호수, 직업 등을 부현(府縣)별로 편집해 1권에 5천~4만5천엔을 받고 기업과 결혼정보회사 등에 판매하다 적발됐다. 규명활동을 통해 여덟 종류의 지명총람의 존재가 확인되고 있으며, 200여곳이 넘는 기업들이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인권 조례' 제정 '인권 도시' 위상 높여야"

도모나가 겐죠 일본 부락 해방·인권 연구소 이사

"광주가 인권과 역사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인권 조례'를 갖는다면 국제적인 인권 도시로서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모나가 겐죠(65) 일본 부락해방·인권연구소 이사는 "한국과 일본은 인권 운동의 전개과정이 사뭇 다르다"며 "한국의 '인권'은 군부 등 권력의 탄압에 대한 저항을 의미하지만, 일본은 각종 차별을 철폐하는 것을 뜻한다"고 밝혔다.

도모나가 이사는 지난 1967년부터 부락해방 운동을 벌여왔으며, 1980년대부터는 일본의 '인권 조례' 운동을 주도하며 일본 인권의 산 증인으로 활동해 왔다.

그는 "한국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 정부를 거치는 과정에서 인권의 중요성이 보다 구체화됐다"며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이나 장애인 등 취약 계층에 대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한 것은 일본이 본받아야 할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국의 인권 상황이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해선 여러 제도적 장치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 제정 작업이 필수적"이라며 "인권 조례에는 정부와 지자체, 국민 등의 책임은 물론, 예산과 인력 배분, 심의회 운영 등의 실천 방향이 명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광주는 5·18 민중항쟁을 통해 한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인권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높다"며 "광주가 인권과 역사성을 접목한 조례를 갖는다면 세계적인 인권 도시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그는 "지난 5월 18일 광주를 방문했을 때 미얀마의 민주화 운동가인 민꼬나잉씨를 '광주인권상' 수상자로 선정한 것을 보고 적잖은 감흥을 받았다"며 "앞으로도 광주가 세계인의 인권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데 관심을 기울여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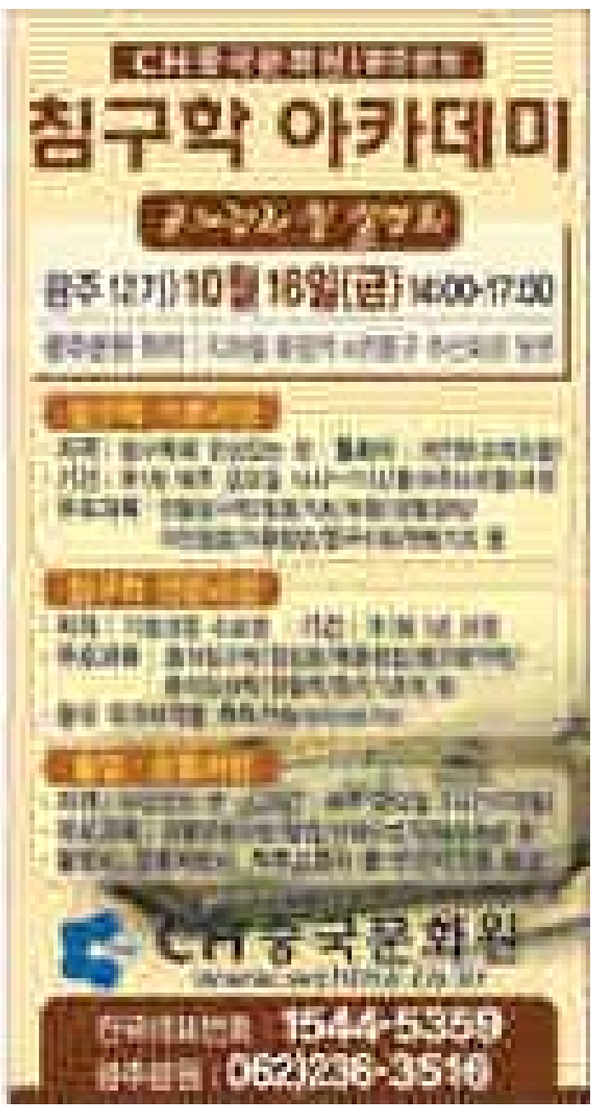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